	규정		문서번호	TWP-A305
			제정일자	1999. 08. 23.
	시간제등록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	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	개정번호	3

목 차

부 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1999. 08. 23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		교학부총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기획처장	사무처장	
직 책	담 당						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
규정

시간제등록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

문서번호	TWP-A305
제정일자	1999. 08. 23.
개정일자	2015. 04. 27.
개정번호	3
페이지	2/4

개정이력
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1. 08. 29.	- 1차 개정
2	2012. 07. 27.	-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관한 규정 → 시간제등록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- 고등교육법 53조 관련, 시간제 등록에 대한 표현의 통일
3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
	규정		문서번호	TWP-A305
			제정일자	1999. 08. 23.
	시간제등록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	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	개정번호	3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6조의2의 시간제등록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2조 (선발) ①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출신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에 의해 선발한다.<개정 2012.7.27>

② 시간제등록과정의 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전공별로 정하는 인원만큼 학기별로 선발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3조 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반으로 편성하여 각각 운영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4조 (학점취득)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,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학과 재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2분의1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.7.27>


제5조 (학위수여) ① 시간제등록생이 이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7.27>

1. 등록학과의 교양필수 전과목과 전공필수 전과목을 이수할 것<개정 2012.7.27>
2. 등록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<개정 2012.7.27>
3. 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일 것<개정 2012.7.27>
4.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7.27>

제6조 (등록금) 시간제등록생은 등록학과 재학생 납입금의 20분의1을 1학점당 등록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7조 (학생활동 금지) 시간제등록생은 이 대학의 총학생회를 비롯한 어떠한 학생활동도 할 수 없다.<개정 2012.7.27>

제8조 (징계) 이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등록 취소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7.27>

	규정	문서번호	TWP-A305	
		제정일자	1999. 08. 23.	
	시간제등록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